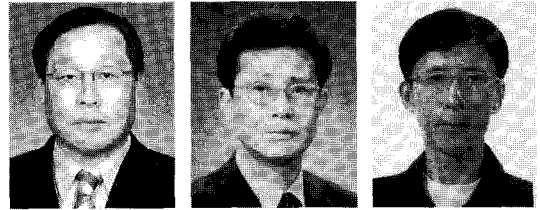


『책임자율점검』 도입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타율에서 자율로 !!



노 성 열 | 정회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건설관리실장
 류 공 수 | 정회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건설관리팀장
 이 봉 섭 | 정회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건설관리팀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제까지 관 주도형의 건설현장 타율점검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책임지고 시정하는 『책임자율점검』을 최초 도입하여 지난 한 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많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1. 서 언

건설기술관리법¹⁾에 근거하여 현장 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수도권 일원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초 수립하는 시공실태점검 계획에 의하면 매년 1,100여개의 현장이 점검대상²⁾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직접 점검비율은 인력, 예산 등으로 인해 불과 2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76%의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대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지난해 시공실태점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을 향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모든 것이 발전적 변화를 화두로 삼는 이 시대에 우리 청에서는 구호에만 그치는 변화가 아닌 행동하는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책임자율점검이란?

건설현장의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책임지고 시정하는 제도로써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메뉴얼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자발적 시정 유도

1)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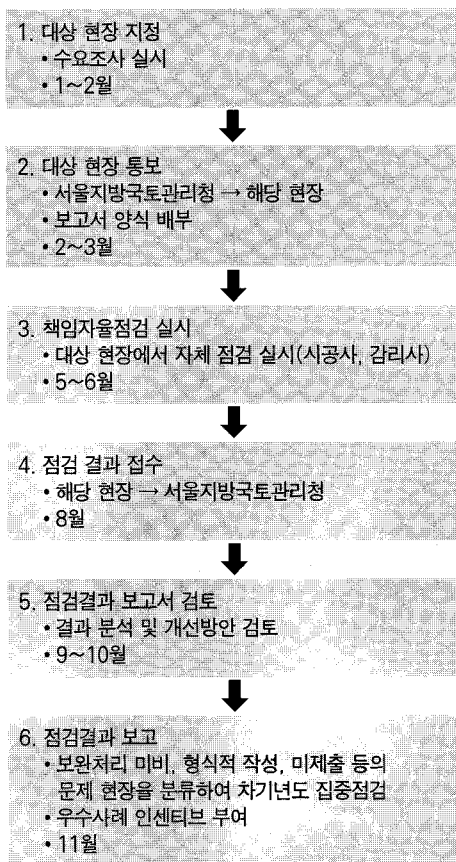
2) 점검대상

-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인 토목 및 건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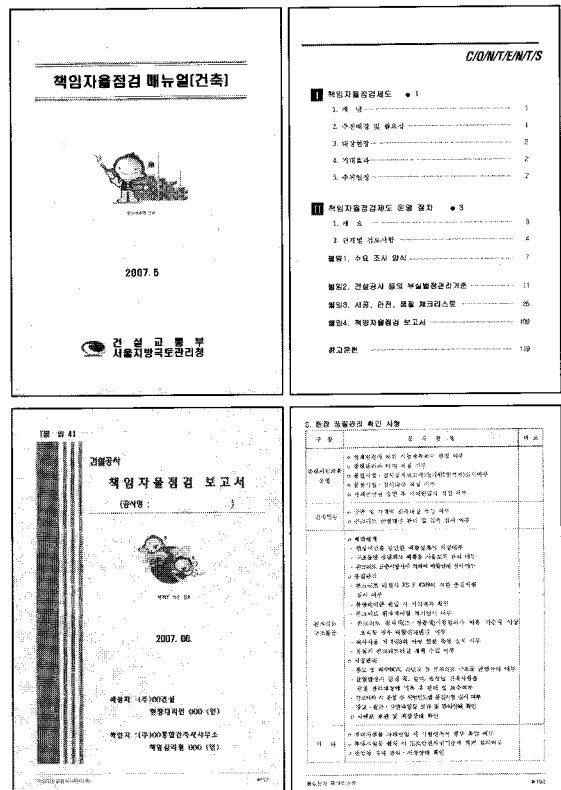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바닥면적 1만㎡ 이상인 건축공사

그 일환으로 2007년도 시공실태점검 대상 건설현장의 기술자에게 시공실태점검에 앞서 각종 제기준의 개정항목, 반복적인 지적사항 등 점검할 항목을 미리 알려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건설시공을 유도하고자 건설현장의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및 품질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수도권내 390여개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자 1,078명이 참석함으로써 계획인원 930명보다 16%나 더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후 745명(응답률 69%)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분석에서 81.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83.3%가 잘못된 관행의 개선에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83.9%가 동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자율점검 흐름도



그러나 앞서 지적된 것처럼 점검인력 부족으로 매년 부실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76%에 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시공실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200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교육 후 “책임자율점검”에 대한 도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466명(응답률 78.1%)중 8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에 따라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관련 책임자가 시공실태를 스스로 점검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배포한 책임자율점검메뉴얼에 맞추어 ‘책임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2007년 4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우선 책임자율점검 대상 현장은 전년도에 점검이 이루어져 2007년에는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현장 248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 63군데 등 총 311개 현장을 대상으로

2007년 5월에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책임자율점검 매뉴얼'을 토목과 건축 두 분야로 나눠 작성 배포하였다.

제출된 책임자율점검 보고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공사현장을 책임자율점검 우수현장으로, 60점 이하는 중점관리대상 현장으로 관리키로 하였으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 등이 있을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차기연도 점검대상에 우선 포함하는 등 보고서 작성의 성실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2007년 9월까지 311개 대상 현장 가운데 75%인 232개 현장으로부터 책임자율점검 보고서가 접수되어 11월 15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평가를 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위원 3인 이외에 건축과 토목분야 각 2인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성실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책임자율점검 대상이 된 현장이 37군데였고, 80점 미만으로 차기연도 시공실태점검 대상이 된 현장이 274군데였다. 현재로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연도에

책임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현장이 37군데에 지나지 않지만 책임자율점검제도의 지속적인 실시와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현장들이 자율점검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임자율점검 실시 첫 해를 마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20개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들을 널리 알려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현장 관계자의 조언을 받았으면 한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설문에 응해 준 건설현장 기술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2. 책임자율점검제도 설문조사 내용 분석

2.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07. 11. 7 ~ 2007. 11. 14

나. 조사대상 : 책임자율점검 대상 311개 건설공사 현장의 책임관리자

다. 조사지역 : 서울 등 수도권내 건설공사 현장

라. 회수율

구분	배포	회수	회수율(%)
토목	388	155	39.8%
건축	234	79	33.8%
계	622	234	37.6%

2.2 설문내용 분석

가. 종합평가

- 응답자의 95.3%가 책임자율점검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반면, '형식적인 점검', '유사한 점검이 많아 중복' 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 실질적인 시공실태 점검이 되기 위해 책임자율점검 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에 대하여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방식으로는 전자메일 등을 통한 자료 송부 방식에 56.4%, 대면강의 방식에 37.7%가 찬성하였다.

- 책임자울점검보고서 미제출 또는 평가기준 미달 현장에 대하여 88.9%가 차기연도 시공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점검자가 성실하게 점검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81.6%가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나. 세부평가

(1) 책임자울점검의 시기

- 책임자울점검 실시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는 53%가 연 1회, 21.4%가 취약시기인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 등 연 3회, 22.2%가 반기별 점검을 선호하였다.
- 따라서 책임자울점검은 연 1회로 하되, 현장별 주요공종 수행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2) 책임자울점검반 운영

- 책임자울점검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공사관계자만 참여하자는 의견이 67.1%이며, 외부전문가 참여를 원하는 비율은 32.9%이었다.
- 외부전문가를 점검반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고 외부전문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현장이 있어, 인근 현장기술자와 자율적 교차점검도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3) 책임자울점검보고서의 작성

- '책임자울점검 매뉴얼'에 대하여는 82.7%가 보완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책임자울점검 보고서'에 대하여는 91.1%가 현재의 보고서 양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건설공사 부실벌점관리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대하여 82.9%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시정과 시정명령을 구분하는데 69.7%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8.6%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책임자울점검 매뉴얼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대체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설공사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대한 이해 및 현지시정과 시정명령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제출된 보고서의 점검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다수 현장이 현지시정과 시정명령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 (1) 책임자울점검에 따른 불만족사항 개선
- (2) 평가결과 우수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3) 책임자울점검제도에 대한 확대시행 강구
- (4) 계도 차원의 책임자울점검대상 현장 사전교육 실시
- (5) 책임자울점검제도 정착을 위한 보고서 작성의 신뢰성 확보

나. 개선방안

- (1) 책임자울점검에 따른 만족도 개선
 - 현장 담당자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매뉴얼 보완("질의 응답" 코너 및 "우수보고서" 사례 소개 등)
 - 책임자울보고서 인계·인수 미이행 등의 사유로 보고서를 미제출한 현장은 '08년도 시공실태점검에 포함하여 점검 강화
 - 우수 시공사례 및 타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배포로 기술정보 공유

- (2) 우수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우수현장은 장관표창 및 차기년도 시공실태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도자료 배포
- (3) 책임자율점검대상 현장 사전교육 실시
 - 책임자율점검 정착을 위한 점검 기법 교육
 -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점검항목에 대한 상·하반기 2회 교육 실시
- (4) 보고서 작성의 신뢰성 확보
 - 지적사항(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사항)이 많거나 없는 경우 점검 현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고서 및 평가방법 등을 보완
- (5) 책임자율점검제도의 점진적 확대 시행
 - 책임자율점검현장 확대('07년 9%, '08년 50% 수준)을 점진적으로 추진

2.4 설문조사결과와 조치 계획

- 설문조사결과 종합분석 내용과 개선방안에 따라 2008년도 책임자율점검 매뉴얼 및 보고서 등 보완 및 추진 시행

3. 맺음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발전된 형태의 여러 정책을 마련해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에 질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 시공실태 점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변화를 위한 기초를 놓았으며, 건설현장 관계자들

대상으로 건설시공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와 부실시공신고센터 운영, 책임자율점검(전문가 참여)** 실시 등을 추진해 적발·처벌 위주에서 자율개선·점검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실태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왔고, 또한 노력한만큼 충분한 성과도 얻었다고 평가한다. 사실 이제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 점검은 건설관계자 모두가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공종이 넓게 펼쳐진 현장에서 책임자를 두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소 소홀한 부분이 지적되기가 십상이다. 들여다보면 현장 내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아직까지는 시정명령을 동반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직접점검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검과 노력만으로는 극히 미흡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관(官)에서 점검을 하든 점검을 하지 않든 공사현장 관계자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항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성실 시공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얼마 전 개최된 길포럼행사의 축사에서 “너와 나를 연결하는 신뢰의 길이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다같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길만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운 『책임자율점검』제도가 부실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부터 확대 시행토록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제도 시행에 적극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戊子年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